

2019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계획

2019. 2.



행 정 안 전 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 목 차 ■ ■

I. 추진개요	1
II. 선정대상	2
III. 선정방식	3
IV. 향후계획	4
【참고 1】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	5
【참고 2】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관리방안	10

2019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계획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란?

- 공공부문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민 편의 제공 및 자원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추진
- * (국정과제 8-4)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 * 시범사업('18.8.~) →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구축(~'19.12.) → 전면 실시('20~)

I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 활성화 및 타 기관 확산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규모)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지원 규모는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 * 지자체는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와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공모기간) '19. 3. 11.(월) ~ 3. 29.(금)
- (공모대상)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응모방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안부로 제출 **【서식 1,2】 참고**
 - 사업 개요, 제공 및 관리 방안, 지역 특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공모절차)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추진 → 확산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추진	사례 확산
▶ 사업계획서 작성 ▶ 지자체 → 행안부	▶ (1차) 서면심사 ▶ (2차) 발표심사	▶ 특별교부세 교부 ▶ 컨설팅 지원	▶ 성과보고서 작성 ▶ 우수사례 공유
3.11. ~ 3.29.	4.1. ~ 4.26.	4.29. ~	12월 ~

- (재원활용) 특별교부세는 인프라 조성 경비로 집행하고, 이외 경비(인건비, 행사비 등)는 자체재원으로 집행

II 선정대상

□ 사업유형

○ 업무용 시설의 주민 개방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

* 제외 대상 :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18년에는 대상이었으나 '19년에는 제외), 주민 전용 휴게실 조성(업무용 시설이 아님), 장난감·공구 구입 등

【 주요 사업유형 예시 】

유형	내용	비고
업무시설 개방을 위한 공간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공간 내 회의실을 개방하기 위한 공간 분리 ▶ 주민센터 외부 계단 개·보수 ▶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주민의 출입이 가능한 별도 진입로 마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특교세 활용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공간 내 CCTV 설치 ▶ 주차관제시스템·출입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상벨 설치 	
개방공간 내 물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탁자·의자, 강당 내 오디오·영상 장비 등 단순 물품 구매 	자체재원 활용
시설 관리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휴일 등 개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확충 등 	

※ 위의 유형은 기존에 추진한 사업 예시로, 이외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함

□ 고려사항

- 단순 지자체 시설 개·보수가 아닌, 개방대상 업무용 시설 중 실제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고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이므로 응모 희망 지자체는 **【서식1】**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Ⅲ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민간 전문가 3인, 공무원 2인 등 5명 내외로 구성
- (운영) 사업 선정, 사업 추진과정 자문 및 보완사항 컨설팅 등 역할

○ 사업 심사 및 선정

- (1차 서면심사) 심사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사
→ 최종 선정 사업 수의 1.5배수 내외 선발

【 1차 서면심사 평가기준 】

항 목	내 용	배 점
타당성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사업 이해도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기관장 관심도, 지방비 확보 등)	30
추진역량	▶ 내용의 충실성, 효과적 추진방안(추진체계·인력, 시설조성 예산 등) ▶ 민간사업자와 갈등방지 등 민간과의 조화·협업 방안	20
창의성	▶ 효과적 자원 관리방안(무인 관리, 지역공동체 활용한 관리 등) ▶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 추진	30
효과성	▶ 사업 시행 전·후 주민 편의 제고 정도(예상치) ▶ 타 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등	20

※ 위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도록 기관에 안내하는 사항이며, 실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세부 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2차 발표심사) 1차 선발된 사업의 소관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 → 최종 선정 사업 선발

* 2차 심사 기준은 1차 심사 통과 기관에 별도 공지 예정(1차 심사 결과 공지 시)

-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보완사항 등을 사업계획서에 수정 반영하여 최종 사업 확정
- (지원규모 확정) 사업의 우수성, 개방자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지자체별 차등) 확정

IV 향 후 계 획

- '19. 3. 11. ~ 3. 29. **지자체 사업계획서 응모**(희망 지자체 → 행안부)
- '19. 4. 1. ~ 4. 26.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19. 4. 29.(잠정) **최종 선정 지자체 통보**
- '19. 5 ~ 11월 **사업 추진**(추진상황 확인, 컨설팅 지원 등)
- '19. 12월 ~ **사례 확산**(우수사례 홍보, 벤치마킹 지원 등)

참고 1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

◇ 공공부문이 보유한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개방하여 국민과 타 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 제공

• (국정과제 8-4)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공유서비스 전면 확대로 달라지는 모습]

구분	참여기관	공유자원	이용방법
현행 (18년)	지자체 중심	회의실·강당 등 시설 위주의 15,000여개 자원 개방	정부24에서 개방자원 확인, 전화·방문 예약
개선 (19년말)	전 공공부문(중앙부처·공공기관· 학교 등)으로 확대	IT기기·연구장비 등 물품 추가, 개방자원을 20,000개까지 확대	단일 포털에서 PC·모바일로 실시간 예약·결제

□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국민) 개방자원을 지도 기반으로 편리하게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예약·결제
- (공공부문)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자원의 등록, 이용 자격 확인 및 예약 관리, 기관 간 물품 공동활용 서비스 이용

□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방기관 지원) 공유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시*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공유자원 유형별 표준운영규정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제공·교육
- (법·제도 정비)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존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공유자원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유자원 정의, 기본계획 수립, 공유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근거규정 마련

□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발굴·확산

- (서비스 활성화) 대국민 공유서비스 이용 수요조사 실시, 기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18.8.1.~) >

- (대상) 국민 수요가 높은 자원(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우선 개방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전까지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정보 제공
- (이용방법)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사용승인 → 사용료 납부 후 이용

- (참여확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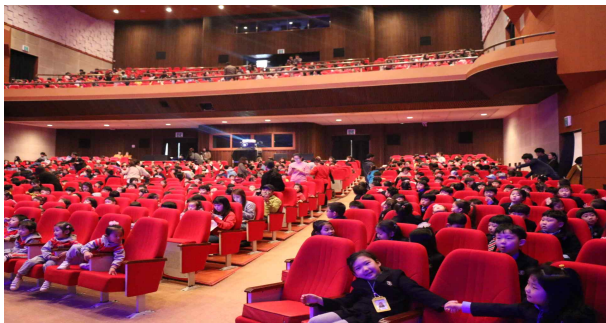
* 지자체 혁신평가 배점 확대 추진(1점→3점)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특교세)

※ 2018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주요 사례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자원 개방

① 강원도 삼척시(강당)

- 대규모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50% 감면), 연 50회 이상 이용 중임



② 경기 수원시

-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관내 97개소 205실을 개방중임. 특히,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 중
- ※ 이용현황('18년) : 총 3,349회 개방

③ 전남 함안군(주차장)

-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 함평문화체육센터의 행사가 없을 때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

④ 경기도(체육시설)

-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교육일정이 없는 토요일·공휴일에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원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많은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음
- ※ 이용현황('18년) : 운동장(23건, 2,867명), 테니스장(477건, 7,135명), 골프연습장(242건, 1,711명)



⑤ 대전광역시 동구(강당)

- 문화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 내 40여개소의 보육 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연간 150여회 개방 중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자원 개방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시설)

- '똑똑세종(시민제안플랫폼)'에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음

※ 현재 체육시설 4개소부터 시범개방 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복합체육관 야간 및 휴일 개방한다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자원봉사자가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는 7월 1일부터 도담·종촌·고운·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을 야간 및 휴일에도 개방한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복합체육관 개방 요청에 부응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주체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휴일뿐 아니라 평일 야간에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야간 및 휴일 개방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복귀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개방시간은 평일 야간 오후 6시부터 10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준희 세종시장은 "그동안 운영인력 부족으로 체육시설 휴일 개방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복귀 시설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개방 기간 동안 주민들은 흡입분개방부터 잠금 및 정리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동 주민센터는 사용자 접수, 시설유지·보수, 예산집행 등 시설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복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에 복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송승희기자

② 서울 성동구(로비)

- 구청사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성동구민, 학교, 기업에게 1만여권의 도서를 기부받아 복합문화공간인 '성동책마루'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하여, 평일 1,000여명, 주말 700여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지역 내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개방

① 광주광역시(강연)

- 관내 7개 대학 및 6개 유관기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3개소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시행되는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아리바다' 플랫폼 운영 중
- ※ 총 287편의 강연 등록, 1일 평균 200회 열람



지식 공유 협약서

광주광역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양면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주공동체의 지식기체,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광주광역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양면 동등할 필요성 상호 간에 제공한다.
2. 제공받은 양면 자료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
3. 양 기관은 향후 지식 공유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호 협조한다.

광주광역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본 협약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7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청장 김기현 한국농어촌공사
사무총장 조영철



지식 공유 협약서

광주광역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유하고 있는 양면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주공동체의 지식기체,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광주광역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양면 동등할 필요성 상호 간에 제공한다.
2. 제공받은 양면 자료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
3. 양 기관은 향후 지식 공유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호 협조한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본 협약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7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청장 김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총장 박경관



아리바다

연화 '신과함께' 주호민 작가 - 무슨 생각으로 그리는가 1강

2017. 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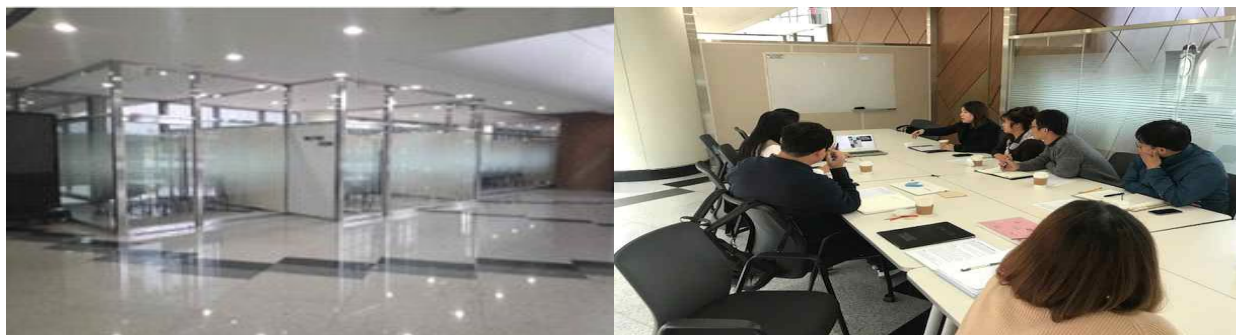
② 부산 북구, 경남 창원시, 충북 단양군(주차장)

- 부산 북구는 관내 공공기관 16개소 287면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 부·울·경 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차장과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
- 창원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18개 학교와 협업하여 754면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열린주차장 사업' 실시
- 충북 단양군은 관내 리조트, 종교시설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방문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6개소 180면의 주차장 개방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공자원 개방

① 충청남도(회의실)

- 도청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부족했던 업무용 회의실을 확충하고, 남은 시간에는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② 충북 음성군(회의실)

- 군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고 학습공간이 필요한 주민과 동아리 등에 개방·공유



[이전] 창고로 사용하는 지하 공간



[이후] 학습공간으로 조성, 개방

③ 서울 영등포구(옥상)

-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영등포구, 추억을 만드는 공간 '어린이들의 천국'

© 원금희 기자 | © 승인 2017.08.14 15:09 | © 연합뉴스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청병청병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 영등포동 주민센터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동 주민센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7일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 뒷밭 내 '청병청병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다.

④ 경북 봉화군(로비)

- 봉화군은 청사 입구 유휴공간(143.94㎡)을 활용하여 '솔향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 중. 또한, 청사 식당을 개방형 회의실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참고 2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관리방안(개방기관 참고용)

※ 既 배포자료('18.8.27.)

1 공통사항

□ 관리체계 및 인력

- (담당부서) 기관 사정에 따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본부·본청의 총괄부서(공유경제, 정부혁신, 시설관리 담당 등)가 서비스 총괄관리
- 자원별 관리 및 서비스 운영은 각 자원의 소관부서가 담당
- (관리인력) 평일 일과시간은 직원이 담당, 주말·공휴일은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공무원의 관리부담 최소화
- 공공 일자리 사업 연계 또는 자원봉사자, 당직직원,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 도(차량) : 담당직원(1명), 당직직원(1명), 자원봉사자(3명)가 대여 관리
- 서울시△△구(회의실, 강당) : 기간제 근로자,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자, 주민 자치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시설 관리
※ 자원봉사자 활용 시 식비·교통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 (월 14~30만원 수준)
- 경기도 □□시(주차장) : 노인일자리사업 인력(5명)을 배치하여 주차장 관리

□ 관리·운영규정

- (운영규정 수립) 이용시간 및 대상, 사용 신청절차, 사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는 행정규칙(중앙부처), 조례(지자체) 등 규정 마련
- (내용) 개방자원 기본 정보(사용료 등) 사용자 변상책임, 기관 면책, 사용허가 제한, 허가 취소·정지, 시설 입장 및 행위 제한, 독점사용 방지, 양도 및 전대 금지 등 포함

□ 사용료(이용료)

- (원칙)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유상대여 원칙

○ (사용료 산출) 시설물별 관리비용, 주민 수요, 보험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기관별 자체 규정에 명시

- 법령·조례 등에 따른 최저 사용료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

※ 시설별 사용료 책정은 [붙임] 자원별 표준운영규정 > [별표] 사용료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① ...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시설 사용료 규정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사용료율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한 없음
사용료감경	불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한 없음

○ (감면) 법령·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과 조건을 명시

※ (중앙부처) 무료개방 불가, 사용료 근거규정 반드시 마련(예약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제외)

(지자체) 무료개방 가능하나,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징수) 사용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 방법(계좌이체, 카드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 결정

○ (처리) 시설·물품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되, 별도의 회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

○ (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예약 취소 시 취소시점에 따른 반환비율 설정

※ (예시) 사용예정일 3일전 전액, 2일전 70%, 1일전 50%, 당일 취소시 미반환

□ 책임보험

- (가입목적) 기관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 (중앙부처·공공기관)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개별 가입
 - (중앙부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손해보험 가입 의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자산'에 대해 보험 의무 부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2조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기관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 가입조건 예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입상품) 》

- ◇ 보험종목 : 재산종합(패키지)보험
- ◇ 가입대상 : 공사 소유물건, 국유물건 등 (재산종합위험담보+영업배상책임보험)
- ◇ 담보조건 : (기본) 재산종합위험, 배상위험, (확장)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공권력 면책, 소규모 공사, 주차장배상책임, 구내치료비 등
- ◇ 특약사항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 / 국유물건)
- ◇ 자기부담금 : 시설소유배상 10만원/사고당, 주차장 배상 10만원/사고당

-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손해보험 가입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 이용시간 및 방법

- (이용시간)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이용, 시간 단위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별·기관별 여건·특성에 따라 자율 결정
- (이용방법) 시스템 개통 후('19.12)에는 시스템 상에서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2 강당 · 회의실

□ 개방형태

- (개방대상)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우선순위 등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조정
- (개방시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사정에 따라 조정

□ 운영 및 관리

- (사용료) 수용인원, 시설 규모,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책정
 -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시민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은 지양
 - 냉·난방기 가동, 음향·조명·영상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 시 별도 요금 징수
- (이용절차) 시스템 구축 전까지 예약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온라인 신청, 없는 기관은 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용신청서 제출 병행
 -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제출, 사용예정일 전까지 완납 원칙
 - ※ 단, 대규모 회의시설의 경우 업무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예정일 7일전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 기관 사정에 따라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기재), 사용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
 - 관리부서는 사용목적, 이전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통보
- (출입관리) 기관 실정에 따라 진입통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증 발급, 업무-개방공간 분리, 별도 진입로 마련 등 출입관리 실시

3 주차장

□ 개방형태

- (개방대상) ① 일반시민 대상, ② 지역주민 우선이용 대상 중 지역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 (개방시간) ① 주말·공휴일, ② 평일 야간, ③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중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

□ 운영 및 관리

- (사용료) ① 무료+자율관리, ② 무료+주차관리요원 배치, ③ 유료+주차관리요원 배치 중 기관 사정에 따라 선택
- (이용절차) 주차장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사전 공지, 공지된 내용에 따라 주차장을 개방하고 시민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이용
- (관리·운영규정) 사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 요건, 사용자 배상책임, 방치차량 조치계획 등을 규정
 - 주차거부, 방치차량 72시간 이후 견인조치, 주차장 내 사고 발생 시 기관면책, 시설 파괴 시 사용자 배상책임 등 세부 내용을 규정에 반영

<주차 거부요건(예시)>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안내판 설치) 주차장 내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 안내,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

4 숙박시설(연수원 등)

□ 개방형태

- (개방대상 및 범위) ① 단체/숙소+부대시설 개방, ② 해당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단체/숙소 개방 등 개방범위 및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

- 경기도(굿모닝하우스) : 일반 시민에게 객실 대여(1박 50,000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 성실납세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개방
- 서울시 인재개발원 : 20인 이상 단체가 교육시설 이용 시 개방
- 근로복지공단 : 기업 등 단체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개방
(중소기업, 진천군 소재 기업 대상 할인 제공)
- 국립부산과학관 :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단체 또는 교육시설을 10개소 이상 대관하는 단체에 한해 숙박시설 개방

- (숙박시설 한정 개방 시 주의사항)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시설만을 개방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제외

- (개방기간) 교육기간에는 주말·공휴일 개방, 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기관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개방하여 시설 활용 극대화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예상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 대상 합숙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계획도 함께 수립·공지

□ 운영 및 관리

- (관리·운영규정) 숙박시설 규모 및 시설 내 집기, 이용가능 부대 시설(강의실, 체육관, 운동장 등) 종류 및 요금, 최대 숙박 가능기간, 입·퇴실 시간 등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5 운동장, 체육시설

□ 개방형태

- (개방대상)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 또는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우선순위 등은 자율 결정
- (개방시간) 주말·공휴일 개방 원칙,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사용자 안전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 제한 설정
- (개방범위) 기존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지 않던 관공서 등의 야외 체육시설(운동장, 잔디구장, 테니스장 등), 실내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운영 및 관리

- (사용료) 잔디구장·테니스장·실내 체육관 등 각 시설의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설정하되, 야간이용 등 옥외 조명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요금 징수
 - ※ 시민이 단순 산책·조깅 등을 위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관리·운영규정) 체육활동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 명시, 월별 이용횟수 제한 등 규정